


**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**

“금융은 **튼튼**하게,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”

	<b>보 도 자 료</b>			
	보도	2021.9.16.(목) 조간	배포	2021.9.15.(수)
담당부서	금융투자검사국	오상완 부국장(3145-7012), 김은아 선임(3145-7014)		

**제 목 : 신기술조합 투자(출자)는 위험이 매우 큰 투자이므로,  
판매 증권사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세요  
- 소비자 경보 ‘주의’ 발령 및 행정지도 예고**

**1. 소비자경보**

<b>■ 소비자경보 2021-13호</b>			
등급	<b>주의</b>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- 최근 증권사를 통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(이하 “신기술조합”)에 투자(출자)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신기술조합 투자는 사모펀드 투자와 유사하나, 그에 비해 투자자보호 수준은 미흡하므로, 투자시 아래의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.
  - ① 신기술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(주로 중소·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)하여, 투자 성공시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, 그만큼 유동성 제약, 원금 손실 등의 “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”임을 알 필요
  - ② 신기술조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을 요청하고,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
  - ③ 투자대상, 구조, 운용주체, 수수료,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확인·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 증권사에게 충분한 설명 및 설명자료를 요구할 필요
  - ④ 투자판단시 판매 증권사 직원에 의존하기 보다는, 제대로 된 설명 및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“자기책임 원칙” 하에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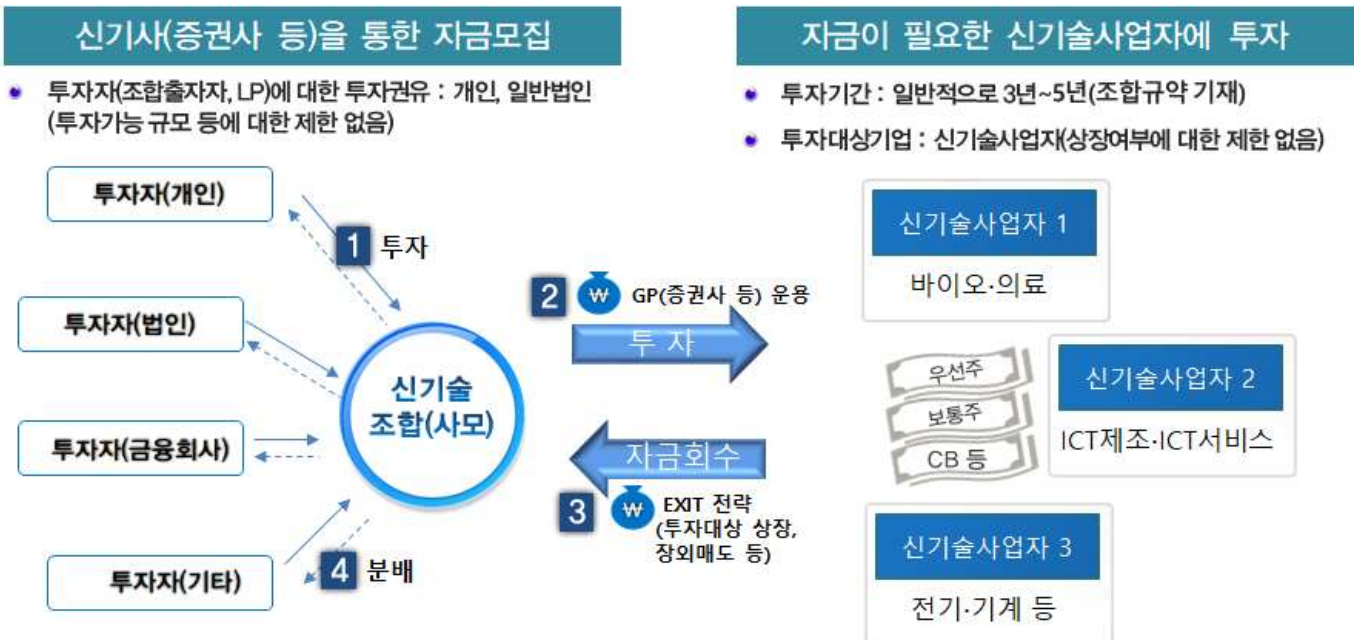
**2. 행정지도**

-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시 금융소비자보호법(“금소법”)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.

## I 추진 배경

- 신기술사업금융회사(이하 “신기사”)는 신기술조합 등을 통해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도입('84년)되었으며,
  - '16년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경영 허용 이후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급성장\*하고 있습니다.
    - \* 약정금액(조합수) : '18말 7.2조원(459개) → '19말 10.3조원(751개) → '20말 11.7조원(997개)
-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는 고위험 투자에 해당됨에도 일부 증권사는 투자 권유시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여
  -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의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한편,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
### 신기술조합의 모집·운영·분배 흐름



#### < 금융용어 설명 >

- **신기술사업투자조합(신기술조합)** :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회사(증권사 등)가 설립한 조합으로, 투자자(조합원)로부터 자금을 모아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
- **무한책임사원(GP)** : 조합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으로 신기술조합의 경우 증권사 등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(또는 동사가 위탁한 공동GP)가 이에 해당
- **유한책임사원(LP)** : 조합 채무에 대해 출자액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으로, 신기술조합에 출자한 투자자가 이에 해당

## II 개인투자자 모집현황

- (신기술조합 설정·모집) '21.3월말 121개 신기사 중 증권사는 23개사로, 252개 신기술조합(사모)을 통해 총 2.3조원(약정금액 기준 2.7조원)을 모집하였으며,
  - 증권사 단독으로 GP(무한책임사원)업무를 수행하기보다 타사와 공동으로 GP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

※ 신기술사업금융 영업은 통상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방식으로, 모집방식과 투자대상이 사모펀드와 사실상 동일합니다.

- (개인조합원 모집)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의 출자자(LP, 3,327명) 중 개인투자자(2,521명)가 75.8%를 차지(출자금액 기준으로는 4,295억원, 18.7%)하며,
  -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일반투자자(2,437명)로, '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 등에 기인하여 급증\*하고 있습니다.

\* '18말 366명 → '19말 792명 → '20말 2,039명 → '21.3말 2,521명

※ 증권사가 지점 등 리테일 조직망을 활용한 조합원 모집 확대시 개인투자자 유입이 더욱 급속도로 증가할 개연성이 있습니다.

### 사모 신기술조합 vs. 사모펀드 비교

구 분	사모 신기술조합	전문투자형 사모펀드
근거법	여신전문금융업법	자본시장법
운용주체	신기술금융사업자 (신기술조합의 GP)	집합투자업자(자산운용사)
투자대상	금융업, 부동산업, 사행산업을 제외하고 투자 가능	제한없음
출자(투자)자 자격	제한없음	전문투자자, 적격투자자(3억원 이상 투자자)
금소법 적용여부	X	○

### Ⅲ 문 제 점

- (제도적 측면) 신기술조합은 고위험 증권(중소·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) 등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,
  -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\*, 증권사(GP)의 투자자 보호장치(설명 의무 등) 마련·이행의무는 없는 상태입니다.
  - \* 여전법에 따라 사모방식으로 금전을 모아 운용·배분하는 경우 금소법 적용 배제(제5조)
- (업무영위 측면) 최근 개인투자자\*(2,521명)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지만,
  - \* 개인투자자 평균 투자금액(모집금액)이 1억원 미만인 조합은 69개(전체 252개)
  - 증권사들은 신기술조합 투자가 투자자 위험성향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거나,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
  - 내부 투자설명서와 투자위험이 포괄적으로 기술된 “위험요인 및 유의사항 사전고지 확인서” 등만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.

#### 신기술조합 투자시 유의할만한 사례

- (사례1) ○○증권은 조합명을 “■■■펀드” 로 기재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음
  - (유의사항 1) 신기술조합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(사례2) ●●증권에서 모집한 ■■■투자조합은 투자대상회사가 사업실패(의약품의 미승인)로 인해 부실화되면서 회사의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이 진행되고 있음
  - (유의사항 2) 신기술조합은 투자기업의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, 실패시 원금 전액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투자구조 및 위험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,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.
- (사례3) ◇◇증권에서 모집한 ▨▨투자조합은 투자대상기업이 만든 IR자료를 사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면서, 보수 관련 사항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
  - (유의사항 3) 신기술조합의 보수(예 : 관리보수 연 2%, 성과보수는 기준수익을 초과분의 20%)는 일반 펀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## IV 대응 방안

- (소비자경보 발령)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허용 수준을 초과하여 투자하거나, 투자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투자하게 되는 등,
  -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신기술조합 투자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.

### < 소비자 당부사항 >

- ① 신기술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(주로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)하여, 투자 성공시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, 그만큼 유동성 제약, 원금 손실 등의 “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”임을 알 필요
- ② 신기술조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을 요청하고,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
- ③ 투자대상, 구조, 운용주체, 수수료,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확인·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 증권사에게 충분한 설명 및 설명자료를 요구할 필요
- ④ 투자판단시 판매 증권사 직원에 의존하기 보다는, 제대로 된 설명 및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“자기책임 원칙” 하에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

- (행정지도)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사모\*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한 권유시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판매규제를 준용하고,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\*\*함으로써

\* 공모방식으로 투자자(출자자, LP)를 모집하는 경우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

\*\* 행정지도는 9.16.에서 10.8.까지(23일간) 의견 청취\*후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.

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> 법규정보 > 금융행정지도 > 행정지도 예고

- 투자자보호체계 강화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.

※ 별첨 :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(안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# 〈별첨〉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(출자)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(안)

## I. 행정지도의 취지

- 증권사 신기술사업금융업 영위와 관련, 투자자에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(출자) 권유시 금소법상 판매절차를 마련·적용토록 지도하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영업관행의 조속한 정착 유도

## II. 행정지도의 내용

◇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시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(금소법 제4장)를 준용\*하고,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

\* 금소법(§5)에서는 증권사가 신기술조합(사모) 출자 권유시 동법 적용을 배제

- ① (판매규제 준용) 신기술조합 투자(출자) 권유시 적합성 원칙, 설명의무, 부당권유행위 금지, 광고규제 등 금융투자상품(사모펀드)의 판매에 준하여 금소법상 판매규제\*를 적용하도록 권고

\* 금소법 제4장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(§13~§28)

- ② (내부통제기준 마련) 권유업무 담당 임직원(공동 GP의 임직원 포함)이 판매규제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이행여부 점검 기준 등을 마련

※ 적용시기 : 행정지도 이후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신규 판매(출자권유)시부터

## III. 행정지도의 시행일 및 존속기한

- (시행일) 공고한 날부터 시행

※ 9.16.에서 10.8.까지(23일간) 의견 청취후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.

- (존속기간) 공고한 날부터 1년간 유효